

의안
번호

137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06. 08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육영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137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5. 19.

라. 회부일자 : 2023. 05. 25.

2. 제안이유

-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신설하여 건강도시로서의 정보·기술의 교류 등의 활동이 필요하여 제안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원봉사자의 모집·운영(안 제5조)
- 나.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 배포 및 사업 공헌에 따른 표창(안 제6조)
- 다. 국가,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 협력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5. 19. ~ 2023. 05. 24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전부개정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 도시로서의 정보·기술 교류 등의 활동을 위한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**안 제5조제3항** 신설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·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함.
- **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** 신설은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·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건강도시 사업 공헌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함.
- **안 제8조**는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및 기술 교류, 홍보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사항을 신설함.
- 그 밖에 개정 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2019. 3. 7.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제8조부터 14조까지 ‘조’ 를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 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.

□ 종합의견

- 본 전부개정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·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6조에는 “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

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” 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고,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